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 단축〉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55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성준 · 조계원 · 이재관 · 허 영 · 민병덕 · 이연희
강선우 · 김윤덕 · 박상혁 · 위성곤 · 황정아 · 조 국
김주영 · 김윤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4. 6. 10.

3. 회 부 일 : 2024. 6. 11.

※ 의안번호 : 25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현행 최대 330일(소관 위원회: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에서, 최대 75일(소관 위원회: 60일, 법사위: 15일, 본회의: 본회의 부의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로 단축하려는 것임.

[표-1] 현행법 및 개정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의 비교

구분	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계
현행	180일	90일	60일	330일
개정안	60일	15일	본회의 부의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	75일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② (생략)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u>180일</u>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u>90일</u>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 ----- <u>60일</u> ----- ----- ----- ----- ----- ----- <u>15일</u>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⑥ -----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상정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삭 제>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안전신속처리제도는 제18대 국회 말에 국회법 개정(2012. 5. 25. 개정,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여·야 간 쟁점 안전이 심의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안전(신속처리대상안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안전이 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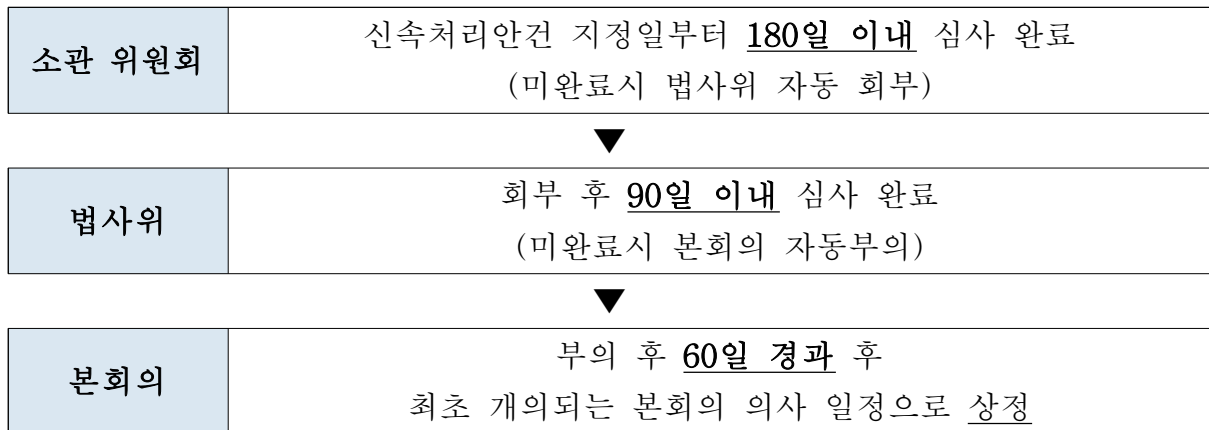
현재 신속처리대상안전으로 지정된 법률안¹⁾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각 심사단계별로 심사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① 소관 위원회 심사단계에서는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단계에 자동으로 회부되고, ②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자동회부된 날²⁾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1) 현재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동의로 특정한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을 요구하면 의장(위원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재적의원(위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신속처리대상안전으로 지정됨.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신속처리 대상안전으로 지정된 안전은 지정일을 기준으로 함.

심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며, ③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으면, “60일”이 경과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됨.

[그림-1]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 절차



안전신속처리제도가 안건이 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됨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³⁾, 개정안은 안전신속처리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대상 법률안의 심사기간을 조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률안 현황)

3)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최대 12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00), ②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최대 75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810), ③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9), ④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최대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812)이 발의된 바 있음.

구분	위원회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사	최대 심사기한
현행	180일	90일	60일	330일
노웅래의원안	60일	30일	30일	120일
진성준의원안	60일	15일	본회의 부의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	75일
주철현의원안	180일	60일	60일	300일
민형배의원안	60일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	90일

참고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위원회안·대안 제외⁴⁾)의 평균 심사기간은 제19대 국회의 경우 311일, 제20대 국회의 경우 309일, 제21대 국회의 경우 303일로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법률상 최대 심사기간인 330일보다 짧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3] 제19대~제21대국회 가결 법률안(위원회안·대안 제외)의 평균 심사기간

구분	가결법률안 건수	평균 심사기간	소관 위원회	
			심사기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
19대 국회	6,149건	311.9일	261.1일	43.3일
20대 국회	7,346건	309.5일	258.9일	46.3일
21대 국회	7,707건	303.5일	252.2일	47.7일

* 주: “평균심사기간”은 법률안이 접수된 날부터 본회의 처리일까지 소요된 기간, “소관위 심사기간” 및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위원회로 회부된 날부터 처리일까지 소요된 기간을 의미함

* 자료: 국회사무처

다만, 안전신속처리제도 등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사항은 2012년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축소와 같이 국회선진화법 체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회선진화법’ 운영체계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

4) 위원회안(대안 포함)의 경우 제안과 동시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가결 법률안의 심사기간 계산시 위원회안을 포함할 경우 평균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결 법률안의 심사기간 계산시 위원회안을 제외함.

- 제20대국회에서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음.
- 제21대국회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음.

[표] 제20대 및 제21대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률안 현황

구분	법률안	발의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	법사위 회부일	본회의 상정일
제20대 국회 (9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인)	16.12.19.	16.12.26.	17. 6.24.	17.11.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1인)	18.12.24.	18.12.27.	19. 6.25.	20. 1.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1인)	18.12.24.	18.12.27.	19. 6.25.	20. 1.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1인)	18.12.24.	18.12.27.	19. 6.25.	20.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7인)	19. 4.24.	19. 4.30.	19. 8.29.	19.12.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19. 4.26.	19. 4.30.	19. 9. 2.	19.12.30.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19. 4.29.	19. 4.30.	19. 9. 2.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18.11.12.	19. 4.30.	19. 9. 2.	20. 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19. 4.26.	19. 4.30.	19. 9. 2.	20. 1.13.

구분	법률안	발의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	법사위 회부일	본회의 상정일
제21대 국회 (4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2인)	23.2.20.	23. 4.27.	(법사위 소관)	23.12.28.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23.3.24.	23. 4.27.	(법사위 소관)	23.12.2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 등 183인)	23.4.20.	23.6.30.	23.8.31.	24. 1. 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23.9.7.	23.10.6.	(법사위 소관)	24. 5. 2

* 자료: 국회사무처